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5,458,289	19,063,749
일반회계		425,875,045	12,776,251
특별회계		209,583,244	6,287,49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83,818	32,515
	주차장특별회계	410,006	12,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03,492	81,1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5,407,538	4,362,22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06,884	48,207
	치수사업특별회계	212,207	6,3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39,547	4,186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8,018,383	1,740,551
	도시개발특별회계	1,369	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57,557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